

# 체육장학사업 시행세칙

제정 2016. 4. 1

경상북도 승인 2016. 4.27

**제1조(목적)** 본 세칙은 장학사업 규정(이하“규정”이라 칭함)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규정 제5조의 체육경기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국제대회, 전국규모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
2. 1호의 국제대회라 함은 올림픽, 아시안게임, 세계아시아선수권 대회에 한한다.
3. 연령 및 학년에 비하여 월등한 경기기록을 수립한 자
4. 연령에 비하여 신체적 조건이 월등하여 장래가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자.
5. 경기 기술이 특히 우수한 자
6. 기타 본회에서 그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3조(장학생의 추천요령)** 규정 제6조에 의한 장학생을 추천할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장학대상자가 국비 또는 기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다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장학금의 선정절차)** 규정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추천기관 및 단체에서 장학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음에 의한 서류를 각각 1통씩 구비하여 본회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(서식 제1호)
2. 사진 (명함판 탈모 상반신 3개월 이내)

**제5조(장학수혜자의 결정)** ①전조에 의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장학수혜자의 선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.

②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없다 할지라도 경기력 향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 장학생을 선발 결정할 수 있다

③장학 수혜자의 선발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6조(추천기간)** 체육장학생의 추천기간은 매년 6월말까지로 한다. 필요에 따라 사무처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경기실적 산정기간)** 체육장학생 추천자의 경기실적 산정기간은 장학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6월부터 당해연도 5월말까지로 한다.

**제8조(운영규칙)** 규정 및 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장학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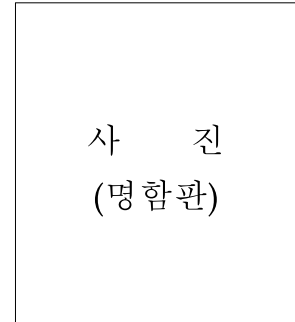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제1호]

## 추천서

1. 성 명 \_\_\_\_\_ (한자 : \_\_\_\_\_ ) 남·여
2. 생년월일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생 (만 세)
3. 학 교 명 \_\_\_\_\_ 학교 제 \_\_\_\_\_ 학년
4. 현 주 소 \_\_\_\_\_ (전화 \_\_\_\_\_ )



5. 지원자 종합성적평가

6. 주요경기실적

7. 장학금수혜선발에 대한 총평(특기사항)

상기자는 체육특기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체육장학금 수혜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추천합니다.

20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추천자    직위

성명

(인)

**경 북 체 육 회 장 귀하**